

2023년 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 채용 재공고

「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의 관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겸비한 인재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3년 3월 31일

(재)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장

1. 채용개요

가. 채용계획

채용분야	직급	채용인원
관장	시설장	1명

나. 담당업무

소속	주요업무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보호전문기관 업무 총괄 - 제주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소장 겸임

2.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가. 공통요건(공고일 기준)

- 응시연령 : 공고일 기준 만18세 이상 만65세 미만인 자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
- 성별제한 :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임용예정일로부터 정상 근무가 가능한 자
- 다음의 결격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구분	결격사유	비고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보호전문기관	제주사회서비스원 인사규정 제8조 결격사유	[참고1]
	노인복지법 제39조의 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시설의 장)	

나. 자격기준(공고일 기준)

- 다음의 자격기준 중 하나 이상을 갖추면서 그 경력기간 내에 추가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

자격기준 (노인복지법 시행령[별표1의2])	추가 자격 요건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사회복지 시설 및 유관기관에서 팀장 등 중간관리자급 경력 5년 이상 ※유관기관: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유사 경력에 명시된 기관
나) 7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행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다)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사회복지시설 및 의료기관, 유관기관에서 팀장 등 중간관리자급 경력 5년 이상 ※유관기관: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유사 경력에 명시된 기관
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 전문요원	

다. 가점기준(우대사항)

구분	대상	우대조건	가점	증빙서류
취업지원 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면접 각 항목 40% 이상 득점 시	법령에 따라 만점의 5% 또는 10%	공고일 이후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명서
장애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2호에 의한 자		면접 총점 5%	장애인 등록증 (장애인 증명서)
사회적 취업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①)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②) .청년 미취업자(만34세 이하)(③)	동점자 발생 시 우대		증명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가점은 관련법률의 적용기준을 따름 ○ 가점은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됨(중복 적용 불가) ○ 사회적취업 취약계층의 경우, 면접전형 동점자 발생 시 ①→③ 순으로 우대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원서 접수 시 해당하는 내용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함. ※ 가점을 받아 채용전형에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 인원의 30%를 초과 할 수 없음.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3. 보수 및 근무조건

가. 근무/근무지: 주40시간(1일 8시간, 주5일 근무), /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 제주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나. 보수수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국비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용

- * 보수 반영을 위한 경력 기간은 입사지원 시 제출한 증빙서류를 기준으로 자격요건 서류 적부심사 시 결정되며, 입사지원서 제출 이후 추가제출 서류는 불인정
- 부가급여: 가족수당

다. 임기: 관장의 최초임기는 3년(2023.5.8.~2026.5.7.)이며, 근무평정에 따라 위수탁 기간내 연장가능(2026.12.31.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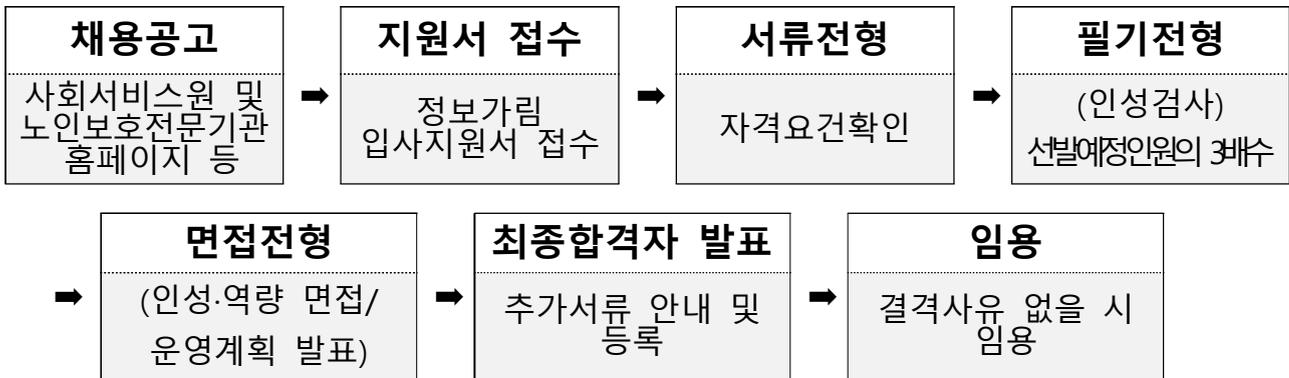
※ 계약기간 중 정년에 도달한 자는 정년에 도달한 날에 당연 퇴직한다.

라. 정년: 만 65세

4. 전형단계 및 채용절차

가. 전형단계: 서류전형 → 필기전형(인성검사) → 면접전형

나. 채용절차



※ 전(前) 단계의 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전형 단계의 응시자격 부여

5. 전형세부내용

가.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1) 채용공고

- 공고기간: '23. 3. 31.(금) ~ 4. 13.(목)
- 공고장소: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제주노인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등
- 직종별 채용인원: 관장(1명)

2) 지원서 접수

- 접수기간: '23. 4. 10.(월) ~ 4. 13.(목) 17:00
- 접수방법: 방문 및 전자우편
 - 방문접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조로 1254, 2층
 - 전자우편: jejupass1@jeju.pass.or.kr

- 응시직위: 관장
 - 제출된 서류는 지원자격 적격여부 및 서류심사를 위해 사용
 - 채용 형식은 정보가림 채용방식으로 진행
- 기타사항: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월~금 09:00~18:00)에만 가능함
(※주말, 공휴일, 점심시간 12:00~13:00 접수불가)
- 문의전화: 070-4173-8693, 8698(복지시설팀)

나. 서류전형

1) 심사방법

- 제출서류를 확인하여 응시자격 적격여부 결정
 ※ 응시자격 부적격, 제출서류 미비자를 제외한 전원을 대상으로 필기전형 응시기회 부여

2) 합격자 결정

평가항목	합격자 결정 기준	비고
· 응시자격 적격/부적격 여부	· 채용분야 응시자격이"적격"인 자	

3) 서류전형 합격자 및 필기전형 대상자 통지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3. 4. 18.(화)
- 통지방법: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 및 개별안내

다. 필기전형(인성검사)

1) 일자 및 장소

- 일자: '23. 4. 20.(목)
- 장소: 제주사회서비스원 본부(제주시 애조로 1254)

2) 대상 및 출제방법

- 대상: 서류전형 합격자 전원
- 출제방법: 인성검사 문제지(분석결과로 전형결과 확인)

3) 합격자 결정

- 합격기준
- 인성검사(※30분간 240문항 전형 실시)

- 인성검사 신뢰도가 70점(100점 만점) 이상인 자
- 정신건강 점수가 40점(100점 만점) 이상인 자
- 인성 평균점수가 60점(100점 만점) 이상인 자
- 부정적 성향, 반사회성, 집단화 성향의 점수가 각 60점 이하인 자
- 동점자 처리기준: 모두 합격

- 위 조건을 만족한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채용인원의 3배수 선발)
- 동점자 처리: 모두 합격
-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로 함(나머지 절사)

4) 합격자 및 면접전형 대상자 통지

-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 '23. 4. 21.(금)
- 통지방법: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 및 개별안내

라. 면접전형

1) 일자/장소 및 전형위원

- 일시: '23. 4. 28.(금)
- 장소: 제주사회서비스원 본부(제주시 애조로 1254)
- 면접위원: 3명(내·외부위원)

2) 심사방법

구분	면접 평정요소	배 점
면접 (50%)	① 공적 책무성, 노인보호전문기관의 목적성 부합여부 ② 이해력 및 지식수준 ③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인성 및 직업관 ⑤ 창의성 및 전문성	50점
발표 (50%)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계획 ①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의 비전 ②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및 관리계획 ③ 노인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활성화 방안 ④ 학대피해노인보호 및 학대행위자 지원방안 ⑤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방안	50점

※ 관장의 경우 운영계획서 발표(50%), 대면면접(50%) 비중으로 심사

※ 운영계획서 발표(PPT 15분 내외)

-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의 비전, 운영 및 관리계획, 노인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활성화 방안, 학대피해노인보호 및 학대행위자 지원방안,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방안을 중점으로 평점

※ 면접전형 결과 전형위원 평균 점수 60점 미만인 자는 불합격 처리하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반영하고, 나머지는 절사

○ (예비합격자 제도) 각 채용직위별 2배수 (차순위 득점자)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임용 후 중도 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거나 채용결격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예비합격자(면접전형 고득점자 순) 순번(채용분야별 선발인원의 2배수 이내)에 따라 추가 임용할 수 있음

6. 채용일정

구 분	채용일정	비고
공고	'23.3.31.(금)~4.13.(목)	홈페이지 공고
원서접수	'23.4.10.(월)~4.13.(목)	방문 및 전자우편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필기시험 안내	'23.4.18.(화)	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 및 합격자 개별안내
필기전형(인성검사)	'23.4.20.(목)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전형 안내	'23.4.21.(금)	
면접전형(인성·역량 면접) 운영계획 발표	'23.4.28.(금)	
최종 합격자 발표	'23.5.2.(화)	
임용	'23.5.8.(월)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전형 단계별 일정 공고 시 확정하여 안내할 예정

7. 제출서류

- 제출기간: '23. 4. 10.(월) ~ 4. 13.(목) 17:00
- 제출방법: 방문 및 전자우편
 - 방문접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조로 1254, 2층
 - 전자우편: jejupass1@jeju.pass.or.kr

구 분	내 용	비고
필수제출 서류	1. 응시원서 [서식1] 2. 자기소개서 [서식2] 3. 직무수행계획서 [서식3]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서 [서식4] 5. 재직/경력 증명서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 인자 서명 및 연락처 기재) 6.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재직·경력 확인용) 7. 주민등록 초본(주민등록 등본 미인정) * 공고일 이후발행	

구분	내용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성 응시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필수 (초본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병적증명서 제출)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미표기로 발급 제출 8. 자격증 사본 (사회복지사 1급이 있는 경우, 2급 자격증도 함께 제출)	
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졸업증명서(재학증명서) - 취업지원 대상자증명서 - 장애인 증명서 - 사회적취업 취약계층 증명서 	
최종합격자 (합격일 이후 발행)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임용후보자 등록원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주민등록 등본 4. 일반 채용 신체검사서 5. 후견등기부사항 부존재증명서 6. 6개월 이내 반명함 사진 1부(3*4cm) 7. 범죄경력조회동의서(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 정보가림 채용을 위하여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작성 시 연령, 성별, 출신지역, 출신학교 등이 노출 되지 않도록 주의바라며, 노출시 불합격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최종합격이후 재직 및 경력증명 내역 수정 불가

※ 지원서 기재사항과 제출 서류의 불일치, 지원서 허위작성 또는 증빙서류의 위·변조 판명 시 합격 및 임용 취소

8. 최종합격자 결정 및 통지

가. 최종 합격자 결정방법

구분	면접 평정요소	합격자 결정 기준	비고
면접 (50%)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공적 책무성, 사회서비스원의 목적성 부합여부 ② 이해력 및 지식수준 ③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인성 및 직업관 ⑤ 창의성 및 전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전형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 후 6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 【동점자 처리】 - 1순위: 취업지원대상자 - 2순위: 장애인 - 3순위: 사회적취업취약계층(①→③) - 4순위: 면접 평정요소 고득점 순 (①→②→③→④→⑤) 	

발표 (50%)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계획 ①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의 비전 ②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및 관리계획 ③ 노인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활성화 방안 ④ 학대피해노인보호 및 학대행위자 지원방안 ⑤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방안	· 모든 전형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 후 6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 【동점자 처리】 - 1순위: 취업지원대상자 - 2순위: 장애인 - 3순위: 사회적취업취약계층 - 4순위: 면접 평정요소 고득점 순 (②→④→⑤→①→③)
-------------	---	--

※ 면접전형 결과 전형위원 평균 점수 60점 미만인 자는 불합격 처리하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반영하고, 나머지는 절사

나. 최종 합격자 통지

- 합격자 발표: '23. 5. 2.(화)
- 통지방법: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 및 개별안내

다. 임 용

- 임용예정일: '23. 5. 8.(월)
- (재)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원장과 고용계약 체결

9. 응시자 권리보호 제도안내

가. 이의신청 절차 안내

- 접수기간: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
 - 접수방법: “채용결과 이의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서명한 후 사회서비스원 복지시설팀으로 제출
 - 예외사유**가 아닌 경우, 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답변 처리
- **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
- 채용전형과 무관한 질의사항, 개인정보(응시자, 전형출제자, 평가관련자)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 저촉되는 경우

나. 채용서류 반환

- 운영근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 청구기간: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

- 접수방법: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서명한 후 사회서비스원 복지시설팀으로 제출
- 반환방법: 입사지원서의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

10. 기타사항

- 가.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전형실시일 7일 전까지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에 공고하므로 수시 확인 바랍니다.
- 나.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 등 채용절차는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다. 정보가림 채용에 따라 입사지원서 작성 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가족관계, 출신지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발견될 경우 전형별 단계에서 임의로 가림 처리됩니다.
- 라.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위조인 것으로 확인되거나, 고의로 누락·추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마. 채용비리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는 즉시 합격이 취소되며, 향후 사회서비스원의 모든 전형에 응시를 제한합니다.
- 바. 응시원서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통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 가점 확인 및 자격 확인용 증빙자료를 제출 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사. 채용 결과 적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아. 최종 합격자의 근무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이며, 임용 후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 자. 임용 예정일 이후 출근이 가능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출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차. 입사지원서 접수마감 후에는 기재내용을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없습니다.
- 카. 채용서류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불합격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서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 이내 청구서가 접수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청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타. 지원자격 요건 심사 및 급여 반영을 위한 경력 기간은 입사지원 시 제출한 증빙서류를 기준으로 자격요건 서류 적부심사 시 결정되며, 입사지원서 제출 이후 추가제출 서류는 불인정 합니다.
- 파. 그 밖에 문의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복지시설팀 (070-4173-869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사회서비스원은 채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인사 청탁을 받지 않으며, 부정합격이 확인되는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1】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인사관리 규정 제8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서 규정한 횡령 및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 규정한 성폭력 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사람
13. 공직자 및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 직원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또는 해임·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참고2】 노인복지법 제39조의 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법원은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노인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고3】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3.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4.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고4】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시설의 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다.

1.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제1항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9까지 및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22조(임원의 해임명령)에 따른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시설의 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